



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은...



글 _ 박종복 변호사

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다.

Q 갑이 본인에게 걸어진 부당이득금 5,000만원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. 본인이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고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1, 2심 모두 본인이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. 상대방은 1, 2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었고 그 비용만 1,000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한다.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얼마나 되는가?

A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패소한 귀하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다만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승소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등 및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등에는 법원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법원이 귀하에게 상대방의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.

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내역은 인지대, 송달료,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, 증인여비, 감정비 등이다. 소가가 5,000만원이었다면 이에 대한 인지대는 230,000원이 되고, 송달료는 90,600원이 될 것이다. 위 송달료 중 실제송달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되므로 위 반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된다. 갑이 변호사 보수로 1,000만원 이상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을 인정한다. 위 대법원 규칙에 의할 경우 소가 5,000만원의 경우 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심급당 205만원씩 1, 2심을 합하여 410만원이 된다. 그밖에 증인여비가 있었거나 감정료 등이 있었다면 이 금액도 귀하의 부담이 될 것이다. 그 절차는 승소한 갑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게 된다.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위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액을 상향시키는 규칙개정을 진행중이다.